

<b>의 안 번 호</b>	1631	<b>【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】</b> <b>검 토 보 고 서</b>
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

## 1. 검토경과

- 가. 발의일자 : 2020. 3. 20.(금)
- 나. 발의자 : 이명녀 의원 외 10명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0. 5. 28.(목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0. 6. 16.(화)

## 2. 제안이유

- 어린이집 통학버스와 관련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,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통학 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,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을 반영한 조례 제정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및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, 적용범위 (안 제1조~제3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(안 제4조)
- 다.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·시행 (안 제5조)
- 라.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(안 제6조)
- 마. 행정적·재정적 지원 (안 제7조)
- 바. 어린이통합버스 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(안 제8조)
- 사. 지도·점검 등 (안 제9조)

## 4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 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
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4조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안전관리기본법」에서 정하는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와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제2항에 정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, 관내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예방 및 안전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
-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 근 거 법 규

### 「지방자치법」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

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(생략)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  - 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  - 나. ~ 차.(생략)

###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·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·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· 시행하여야 한다.